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별표 3 제1호사목 품목란 6)을 삭제하고, 같은 목 7)부터 18)까지를 각각 6)부터 17)까지로 하며, 같은 목 품목란 19)를 삭제하고, 같은 목 23)부터 26)까지를 각각 19)부터 22)까지로 하며, 같은 목 품목란 20)을 삭제하고, 같은 목 21)을 18)로 하며, 같은 목 품목란 22)를 삭제하고, 같은 목 품목란 22)(종전의 26)) 중 “가목부터 커목”을 “1)호부터 21)호”로 하며, 같은 호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

/L 이상, 충전전압 4.4 V 이상의 리튬 이차 단전지에 한정한다)

별표 3 제1호2)를 3)으로 하고, 같은 세호(종전의 2)) 중 “가목”을 “1)호와 2)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사목 품목란 22) 중 “100kVA”를 “200kVA”로 하고, 같은 목 38)을 42)로 하며, 같은 목에 38) 및 3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사목 품목란 42)(종전의 38)) 중 “가목부터 조목”을 “1)호부터 41)호”로 하고, 같은 목에 40) 및 41)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전기가열기기

41) 전기욕조

별표 4 제1호자목 품목란 4)를 삭제하고, 같은 목 5)부터 7)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며, 같은 세호 품목란 6)(종전의 7)) 중 “가목부터 바목”을 “1)호부터 5)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품목란 6)을 삭제하며, 같은 목 7)부터 14)까지를 각각 6)부터 13)까지로 하고, 같은 세호 품목란 13)(종전의 14)) 중 “가목부터 파목”을 “1)호부터 12)호”로 한다.

별표 5 제1호26)을 27)로 하고, 같은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에 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전자악기

별표 5 제1호27)(종전의 26)) 중 “가목부터 커목”을 “1)호부터 26)호”로 하고, 같은 호 30)을 31)로 하며, 같은 목에 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제본기

별표 5 제1호차목 품목란 31)(종전의 30)) 중 “가목부터 노목”을 “1)호부터 30)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차목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는 2020년 0월 0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사목 22)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19년 0월 0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4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안전확인 신고를 하거나 안

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5 개정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4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 신고 또는 안전검사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서를 제출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 :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2. (생 략) <신 설>	제16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1항제1호----------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제33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제33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1항제1호----------

2. (생　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별표]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r>
<tr><td>[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table>
<tr><th>분류</th><th>품목</th></tr>
<tr><td>가. ~ 바.</td><td>(생략)</td></tr>
<tr><td>사. 전기기기</td><td>1) ~ 5) (생략)
6)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電動機器)
8) 전기액체가열기기
9)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td></tr>
</table></td><td>[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table>
<tr><th>분류</th><th>품목</th></tr>
<tr><td>가. ~ 바.</td><td>(생략)</td></tr>
<tr><td>사. 전기기기</td><td>1) ~ 5) (생략)
~~6)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電動機器)
7) 전기액체가열기기
8)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td></tr>
</table></td></tr>
</table>

현행	개정안
1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1) 전기온수기 12) 전기 냉장·냉동기기 13)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충전기 1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열기구 17) 전기마사지기 18) 냉방기 1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9)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0) 전기온수기 11) 전기 냉장·냉동기기 12)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기충전기 14)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5) 전열기구 16) 전기마사지기 17) 냉방기 ~~1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현행		개정안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20) 전기가열기기 21)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2) 전기욕조 23) 팬, 레인지 후드 24) 화장실용 전기기기 25) 가습기 26)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20) 전기가열기기~~ 1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2) 전기욕조~~ 19) 팬, 레인지 후드 20) 화장실용 전기기기 21) 가습기 22) 그 밖에 1)호부터 21)호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아. ~ 자.	(생략)	아. ~ 자.	(생략)

현행		개정안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신 설 >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 이상, 충전전압 4.4 V 이상의 리튬 이차 단전지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가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3) 그 밖에 1)호와 2)호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생략)	카. 조명기기	(생략)
2. (생략)		2. (생략)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r>
<tr><td>[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table>
<tr><th>분류</th><th>품목</th></tr>
<tr><td>가. ~ 바.</td><td>(생략)</td></tr>
<tr><td>사. 전기기기</td><td>1) ~ 21) (생략)
22)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3) ~ 37) (생략)
< 신 설 >

< 신 설 ></td></tr>
</table></td><td>[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table>
<tr><th>분류</th><th>품목</th></tr>
<tr><td>가. ~ 바.</td><td>(생략)</td></tr>
<tr><td>사. 전기기기</td><td>1) ~ 21) (생략)
22)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3) ~ 37) (생략)
38)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td></tr>
</table></td></tr>
</table>

현행		개정안	
	< 신 설 > < 신 설 > 38) 그 밖에 가목부터 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40) 전기가열기기 41) 전기욕조 42) 그 밖에 1)호부터 41)호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전기차 충전기는 제외한다)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전동공구	대상 없음	아. 전동공구	대상 없음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1) ~ 3) (생략) 4) 전자악기 5) 오디오프로세서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1) ~ 3) (생략) ~~4) 전자악기~~ 4) 오디오프로세서

현행		개정안	
	6) 영상프로세서 7)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5) 영상프로세서 6) 그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 5) (생략) 6) 제본기 7)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무정전공급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9)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10)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1) 코팅기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 5) (생략) ~~6) 제본기~~ 6)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7) 무정전공급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9)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0) 코팅기

현행		개정안	
	12)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11)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12)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1)호부터 12)호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생략)	카. 조명기기	(생략)
2. (생략)		2. (생략)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분류	품목
가. ~ 아.	(생략)	가. ~ 아.	(생략)
자. 오디오ㆍ비디오	1) ~ 25) (생략)	자. 오디오ㆍ비디오	1) ~ 25) (생략)

현행		개정안	
응용기기	< 신 설 > 26)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응용기기	26) 전자악기 27) 그 밖에 1)호부터 26)호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1) ~ 29) (생략) < 신 설 > 30) 그 밖에 가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1) ~ 29) (생략) 30) 제본기 31) 그 밖에 1)호부터 30)호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starter)	카.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starter)
2. (생략)		2. (생략)	